

# 예 산 총 칙

제1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계	<b>1,003,058,055</b>	<b>30,091,744</b>
일반회계	898,273,185	26,948,196
특별회계	104,784,870	3,143,548
기타특별회계	14,876,135	446,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사업특별회계</li> <li>• 교통사업특별회계</li> <li>•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li> <li>• 기반시설특별회계</li> </ul>	793,921 9,886,592 3,849,594 346,028	23,818 296,598 115,488 10,381
공기업특별회계	89,908,735	2,697,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사업특별회계</li> <li>• 하수도사업특별회계</li> <li>•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li> </ul>	32,569,752 49,288,583 8,050,400	977,093 1,478,658 241,512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59,676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